

의안번호	2218609
의 퇴 인	김기웅의원
회 답 일	2026.07.22.
추계번호	26C2417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4 신설 (학교시설 환경위생 에 관한 별도 기준)	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 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시설은 제외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야 한다(제1항). 1. 오염공기·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 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 2.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 시설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, 대상, 지역 등 적용범위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(제2항)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의4 신설 (학교시설 환경위생에 관한 별도 기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오염공기·먼지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현행 「학교보건법」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함

□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기준이 상향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그러나, 개정안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, 현행 설비의 활용 가능성 및 추가 설비 규모, 신규 점검 수요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이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현행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¹⁾ 내지 제4조의3²⁾에 따라 개별 학교는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,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일부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상향된 환경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수시점검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, 개정안은 환경위생 기준에 포함될 항목, 대상, 지역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「학교보건법」

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)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[교사대지(校舍地)·체육장, 교사·체육관·기숙사 및 급식시설,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의 환기·채광·조명·온도·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, 상하수도·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, 오염공기·석면·폐기물·소음·휘발성유기화합물·세균·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·식품·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생략)

2) 「학교보건법」

제4조의2(공기 질의 유지·관리 특례)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·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공기정화설비 등 설치)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